

1. 개정이유

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의 작업책임자 사전보고, 형식승대상설비에 대한 변경승인 및 성능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「해양환경관리법」 개정(2023.10.24. 공포)에 따라 작업책임자의 자격요건 구체화, 변경승인 및 성능검사 절차 등 법률에서 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 대상선박 확대 등 기타 협약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선박폐기물기록부 비치대상 확대(안 제23조제1항)

「해양오염방지협약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 선박 확대(총톤수 400톤 이상 → 총톤수 100톤 이상)

나. 선박대선박 기름이송 작업책임자 기준 마련(안 제5조제4호)

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는 작업책임자의 자격기준을 「해양오염방지협약」 기준을 반영하여 구체화

다. 형식승인 변경 절차 마련(안 제55조제4항, 제56조제1항 및 별표 32)

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등 절차 신설 및 부정 변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 마련

라.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절차 신설(안 제60조의2)

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, 중대한 결함의 기준 및 보완 또는 교환 등의 절차 등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예정(∼1월)

3) 행정규제 : 예정(1월)

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별지 제1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의2서식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제1호 중 “400톤”을 “100톤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”을 “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”으로 한다.

제27조의4의 제목 “(작업계획의 보고사항)”을 “(작업계획 등의 보고사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제6호에 따른 책임자”를 “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업책임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해당 선박에 대하여 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별표 3에서 정하는 선장의 자격이 있을 것

제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조의2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(변경사항이 성능에 영향

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2. 변경사항을 적은 서류 및 증명서류

제56조제1항 중 “첨부하여”를 “첨부(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성능 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)하여”로 한다.

제57조제1항 중 “한 때”를 “하거나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때”로 한다.

제5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국제협약에서 형식승인을 요구하지 않거나 면제된 형식승인대상설비 중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에 적합한 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, 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 제60조의2를 제60조의3으로 하고,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0조의2(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)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.

1.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인 경우
2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법 제110조제12항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형식승

인대상설비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.

1. 형식승인대상설비가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
2. 형식승인대상설비가 법 제110조제6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
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제1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12항에 따른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와 동일한 형식과 모델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해야 한다. 이 경우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라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교환을 명할 수 있다.

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보완 또는 교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보완 또는 교환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.

⑤ 법 제110조제1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
2.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중대한 결함 사실
3.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,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
4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별표 3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3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) 이 규칙 시행 당시 적발된 위반사항의 경우 별표 제3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(제60조제1항 관련)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
		1차	2차	3차
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	법 제110조제9항제1호	형식승인 취소		
2.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	법 제110조제9항제2호	업무정지 6개월	형식승인 취소	
3.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	법 제110조제9항제2호의2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형식승인 취소
4. 기준에 미달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를 판매한 때	법 제110조제9항제3호	업무정지 6개월	형식승인 취소	
5.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	법 제110조제9항제4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형식승인 취소

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 5일	
신청인	성명 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)	한글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	
	영문				
	주소		전화번호		
형식승인 대상설비	품명				
	형식 및 용량				
	성능시험합격				
	증서번호				
	형식승인 증서번호				
변경사항	변경 전			변경 후	
변경사유					

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10조제3항, 「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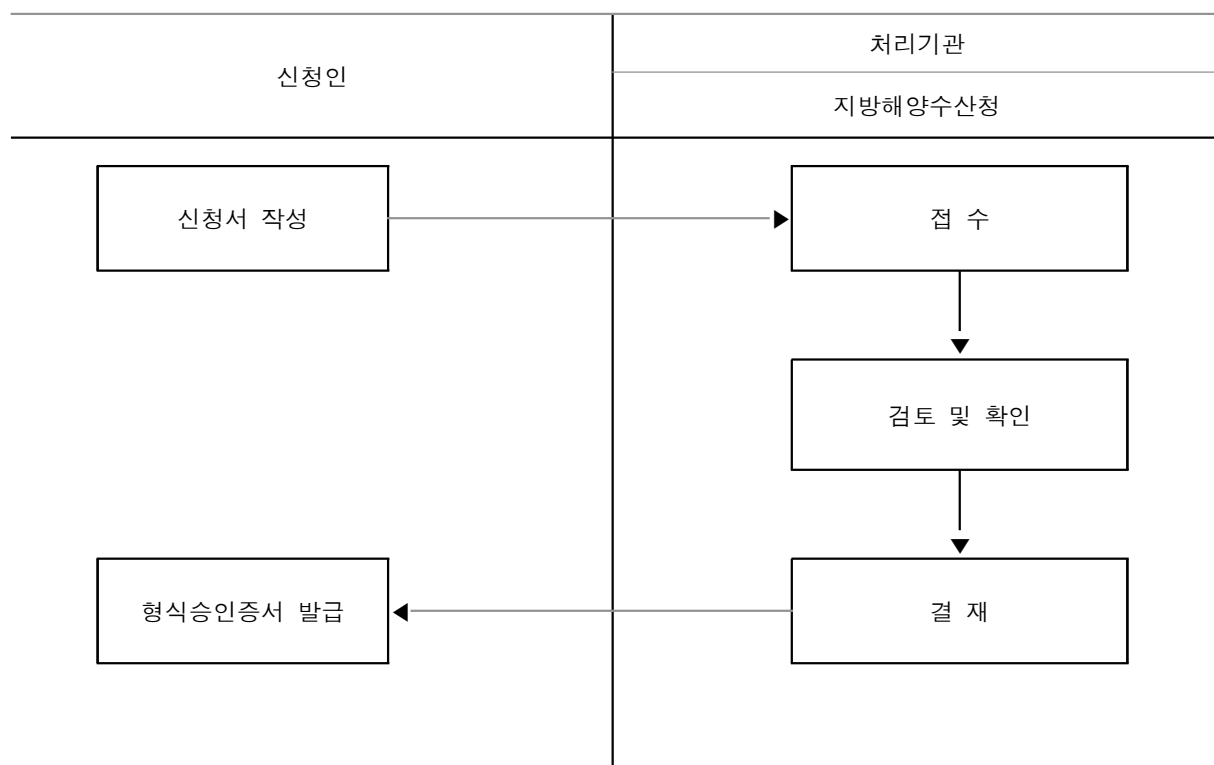
귀하

첨부서류	1.성능시험합격증명서(변경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)	수수료
	2.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	3,000원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☐ 해양오염방지설비 ☐ 방오시스템 ☐ 선박소각설비 ☐ 보완 ☐ 교환 명령서		
형식승인의 내용	품목	
	형식	
	형식승인증서 번호	
	제작번호	
제 조 일 또는 수입 일		
제 조 자 또는 수입자의 상 호 및 소재 지		
결 함 내 용		
보완·교환의 기한	☐ 보완	년 월 일
	☐ 교환	년 월 일
	☐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의 교환	년 월 일
비 고		
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10조제12항 및 같은 법 규칙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, 방오시스템 또는 선박소각설비를 ☐ 보완 ☐ 교환할 것을 명합니다. 년 월 일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직인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) ① (생략)	제18조(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6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<u>별지 제1호서식</u> 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1호의2서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 대상선박)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“해양수산부령이 정하	제23조(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 대상선박) ① ----- -----

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”이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선박을 말한다.

1.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
2.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
원이 15명 이상인 선박(운항
속력으로 1시간 이내의 항해
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하
다)

② (생 략)

제27조의4(작업계획의 보고사항)

① ~ ③ (생 략)

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책임자는
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
어야 한다.

1.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
시하는 해기사 자격이 있을
것

2. ~ 4. (생 략)

제55조(형식승인대상설비 등) ①

~ ③ (생 략)

<신 설>

-----.

1. ---- 100톤 -----
2.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
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

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7조의4(작업계획 등의 보고사

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
작업책임자-----
-----.

1. 해당 선박에 대하여 「선박
직원법 시행령」 별표 3에서
정하는 선장의 자격이 있을
것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55조(형식승인대상설비 등) ①

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형
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
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
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

제56조(성능시험) ① 법 제110조 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에 설비의 제조명세서, 구조도면, 작동설명서를 <u>첨부하여</u>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<u>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 1. <u>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(변경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한다)</u> 2. <u>변경사항을 적은 서류 및 증명서류</u> 제56조(성능시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첨부(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성능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)</u> <u>하여</u> ---.
② (생략) 제57조(형식승인증서의 발급)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<u>한 때에는</u>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	② (현행과 같음) 제57조(형식승인증서의 발급) ① ----- ----- ----- <u>하거나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때</u>----- -----

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59조(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
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) 지방
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제7
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승인대상
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, 성능
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
인정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9조(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
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) 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국제협약에서 형식승인을 요
구하지 않거나 면제된 형식승
인대상설비 중 제56조제2항에
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에
적합한 설비로서 외국에서 도
입, 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
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

제60조의2(형식승인대상설비의
성능검사) ① 지방해양수산청장
은 법 제110조제11항에 따라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경우에는 형식승인대상설비
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.

1.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
식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

처분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인 경우

2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법 제110조제12항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형식승인대상설비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.

1. 형식승인대상설비가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
2. 형식승인대상설비가 법 제110조제6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
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제1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12항에 따른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와 동일한 형식과 모델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6개월 이

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 제110조 제12항에 따른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해야 한다. 이 경우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교환을 명할 수 있다.

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 제12항에 따른 보완 또는 교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보완 또는 교환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.

⑤ 법 제110조 제1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
2.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중대한 결함 사실
3.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,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
4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0조의2 (생략)

제60조의3 (현행 제60조의2와 같

음)
